

<등록부정정 허가결정 이후 절차>

2020. 9. 15. 트랜스로드맵(<http://transroadmap.net>)

허가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이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완료 된 이후 보험, 학교, 은행, 인터넷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정정하면 됩니다. 또한 허가 결정문은 각각의 정보를 변경할 때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장 복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먼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별을 변경합니다. 여기에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결정문을 갖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 제외) 등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정정 신청을 합니다. 처리기간은 통상 일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완료되어도 따로 연락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때는 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문의하거나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 보아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는 근처에 시·구·읍·면사무소 어디든 해도 되지만,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곳에 할 경우 보다 빨리 처리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https://www.gov.kr>)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안내를 참조하면 됩니다.

나. 인터넷 접수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인터넷 신고 > 신청서 작성 > 등록부정정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정문을 별도로 보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3 ~ 7 일 정도이며 수신 동의 시 문자 또는 메일로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방문신고	인터넷신고
허가결정등본 첨부여부	필요	불요
신분확인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인인증서
신고장소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구·읍·면사무소)	인터넷이 연결된 모든 장소
처리결과통지	없음	SMS문자 또는 이메일 통지(수신동의 시)
제출자 신분	신고인 여부 불문	신고인만 가능
신고가능 시간	평일 9시 ~ 18시	▶ 신고서 작성 가능 시간 : 24시간 ▶ 신고서 제출 가능 시간 : 좌동
신고가능 사건	모든 신고사건	개명, 국적 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건 (4종류의 신고만 가능)

< 방문/우편신고와 인터넷 신고의 비교 >

2. 주민등록 정정과 주민등록증 재발급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면 통상적으로 해당 내용이 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등에도 전달되어 주민등록번호 정정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행정기관의 내부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정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거나 정부24 >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에 들어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정정된 후에는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최근 6개월 내 사진을 들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며, 재발급 기간 동안 임시 신분증을 지급해 줍니다.

또한 주민등록 외 다른 정보들을 변경하기 위해 변경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변경내역이 포함된 초본을 여러 장 발급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3.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부, 보험, 은행 등 다른 서류들 변경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다른 서류에 기재된 성별정보가 같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적인 서류는 각각 경찰서, 구청 등에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공적 서류 외에 보험, 학생부, 여러 사이트의 회원 정보 등 사적인 정보들 역시 각각 연락하여 변경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변경을 거부하거나 성별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